

##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환학생, 연수생, 해외수업 대상자 등으로 선발되어 본교 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09.0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학점교류생'이라 함은 본교 또는 해외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성적으로 인정받는 학생을 말하며, 교환학생, 방문학생, 연수생, 복수학위 과정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3.02.27., 2014.02.27., 2017.09.26.)
2.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 대학과의 교류협정에 따라 상호 파견하는 학생을 말한다.
3. '방문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 대학과의 교류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 및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대학 학생을 말한다. 다만, 외국대학 학생은 교류협정 없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13.02.27., 2014.02.27)
4. '복수학위 과정자'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교류협정에 의거하여 학점 취득 및 학위수여조건을 만족시켜 협정 체결한 두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4.02.27.)
5. '연수생'이라 함은 본교의 해외연수프로그램, 외국인을 위한 단기프로그램 및 외국대학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12.09.01., 개정 2014.02.27.)

### 제 2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3-3-11~2 제3편 행 정

**제4조**(지원대학) 교환학생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으로 한다.

**제5조**(수학기간 및 학적) ①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의 수학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협정내용에 의하되 각 프로그램 당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파견기간이 총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2.27)

②복수학위과정자의 수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02.27)

③ (삭제 2014.08.12)

④해외학점교류생으로 수학하는 기간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포함하며 본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연수생은 연수기간 중에도 학점취득이 가능하다.(개정 2012.09.01, 2015.03.01.)

⑤제1항의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휴학 또는 수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동일 국가 학기인정 해외프로그램 파견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총장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3.02.27)

⑦ (삭제 2014.08.12)

**제6조**(지원자격) 해외학점교류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학사과정은 평점평균 2.5이상, 대학원과정은 평점평균 3.5이상인 자(복수학위 지원자는 1학년 또는 2학년 수료자, 계절학기 해외학점교류 지원자는 1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2.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자(복수학위 지원자,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어학연수 지원자 제외) (개정 2019.08.29.)
3.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7조**(지원서류) 해외학점교류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수학계획서 1부
3. 학과(부)장 추천서 1부
4. 성적증명서(영문) 및 재학증명서(영문) 각 1부
5.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 1부

영 어 : TOEIC, TOEFL, TEPS, CPE, G-TELP 중 택일

일 어 : JPT, NIKKEN 중 택일

중국어 : HSK

기 타 : 본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해당 언어의 공인성적표 원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선발 및 의무)** ① 해외학점교류생을 선발하기 위하여는 수학능력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복수학위 과정자의 경우 학생 본인 소속학과(전공)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전공)가 국외대학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직이수자, 편입생,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5년제 건축학과(전공) 및 한의예·학과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선발된 해외학점교류생은 양교의 학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학기의 수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한다.

④ 해외학점교류생의 외국대학 수학 중에는 휴학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 다만, 학기 시작 3주 이내 기간 중 신청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해외학점교류생은 본교 및 파견대학에 모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 ① 해외학점교류생이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과 교양, 부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외학점교류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과정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해외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2.09.01., 2014.08.12)

③ 학사과정의 학점 인정은 국내대학 및 해외수업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④ 해외학점교류생은 수학기간 종료 후(복수학위 과정자는 매학기) 성적증명서와 교과목 이수 기록 등 관련서류를 국제교류처 등 해당 해외교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교류담당부서는 한글명과 영문명으로 작성된 소정의 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30., 2013.02.27., 2017.09.26., 2018.05.29.)

⑤ 복수학위 과정자에 대한 학점인정이 소정의 졸업사정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대학교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은 다음 학기로

연기된다.

⑥복수학위 과정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며,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 제 3 장 외국인 학생의 본교 수학

**제10조**(지원자격) 외국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 대학에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적생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지원시기) 정규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시작 3개월, 계절학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2개월 전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정원) 정규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 정원의 10분의 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경우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계절학기 강좌 개설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9.26.)

**제13조**(지원서류)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국제교류처 등 해당 해외교류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11.30., 2017.09.26.)

1. 지원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성적증명서(영문) 및 재학증명서(영문) 각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허가 및 절차) ①본교에서 수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 학생에게는 서류심사, 구술고사 및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본교에서의 수학이 허가된 외국인 학생에게는 외국 대학에서의 전공을 판단하여 해당 학과(부)를 배정한다. (개정 2013.06.28.)

③해당 학과(부)장은 외국인 학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의 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2013.06.28.)

④계절학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등록금 등) ①외국인 학생은 소정의 등록금 또는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6.28.)

②등록금 또는 계절학기 수강료는 본교 재학생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제16조**(학칙준수) 외국인 학생은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17조**(교과와 이수, 성적) ①외국인 학생의 교과와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성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②외국인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18조**(시설물 이용)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강증을 발급하여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19조**(기타)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3-11~6 제3편 행 정

이 규정은 201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